

##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공고

2019. 9.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2019. 9. 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2019. 9. 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주주 조치 사항

- 2019. 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라며,
- 2019. 8.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9. 8.21 ~ 9.11일까지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실물 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증권회사 방문 기일(2019. 8.21일) 및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고,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는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당사(발행인)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2019. 9.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3. 다만, 당사는 2018년 7월 1일 신설법인으로, 2018년 5월 29일 분할전 법인의 분할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18년 5월 30일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신주권을 교부받지 않으신 주주님(분할전 법인의 구주권을 보유하신 주주)께서는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마시고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2019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30 (역삼동)

대표이사 **곽 의 영** [직인생략]



##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방문 시 필요 서류

구 분	신청인	필요 서류
개 인	본 인	1.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 2. 신분증 3. 주권 실물
	대리인	1.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 - 청구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위임장 (본인 인감 날인) 2. 본인 신분증 사본 - 1차 복사본만 가능 (팩스본, 스캔본, 재복사본 불가) 3. 대리인 신분증 4. 본인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주권 실물
법 인	대표자	1.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 - 청구인 (법인 인감 날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표자 신분증 4.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표시 6. 주권 실물
	대리인	1.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청구서 - 청구인, 위임장 (법인 인감 날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표자 신분증 4.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표자 주민번호 13자리 표시 6. 주권 실물

※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주소 및 연락처 [<http://sab.hanabank.com/>]

구분	주소	전화번호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2 (여의도동 43-2)	02-368-5800

※ **구주권을 보유한 명부주주님은 반드시 신고된 인감을 추가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